

이 추록은 2024 『CORE(코어) 세법학』 제10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

1. 정오사항

면	행		종전의 내용	고칠 내용
	좌측	우측		
86	상 5		(결산조정사항)	(결산조정진제)
	상 6			
176		상 6~7	기준에 해당하는	기준 이상에 해당하는
243		상 10	상장주식은	상장주식 및 가상자산은
283	상 10		사업 영위	사업 영위. 다만,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
309		상 16(개정)	2024년 4월 30일	2024년 6월 30일
361		상 5	징수함	징수함. 다만,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·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
423		상 6	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	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

◆ p.80 왼쪽 하 2~오른쪽 상 1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(개정)

- ① 주주(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) : 배당
- ② 직원(임원 포함) : 상여
- 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: 기타사외유출
- ④ 위 ①~③ 외의 자 : 기타소득

◆ p.348 왼쪽 하 8~6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(개정)

- ③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㉠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
 - ㉡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
 - ㉢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
 - ㉣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